# 제269회(임시회) 제 2 차본희의 <br> 2008년 4월 24일 (목) 

심 사 보 고 서

##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 청 북도 의 회
행정자치위원회

##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 심 사 보 고 서2008. 4. 24. 

행정자치위원회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:2008년 4월 7일 충청북도지사
2. 회 부 일 자: 2008년 4월 11일
3. 상정 및 의결일자

O 제 269 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(2008.
4. 21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-토론, 심사의결(원안)
II. 제안설명 요지
(제안설명자 :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)

1. 제안이유

○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국민 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권고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2. 주요내용

O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공급 규정 삭제(제22조제2호)
O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주택규모 규정 삭제(제22조제3호)
III. 검토보고 요지
(행정자치전문위원 고일준)

○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(현 국민권익위원회)의 권고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○ 주택재건축사업 시 주택의 공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 나목에서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한하여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
$\bigcirc$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방법 및 기준에 의하도록 하면서 단서 규정에서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.

O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2006년 12월 22 일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제정하면서 동 조례 제22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임대사업자에게도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 이는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으로 법령 에 부합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임.

O 이에 대하여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2조를 검토한 결과 이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.

○ 따라서 이와같은 규정은 법령위반 조례로서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조합 또는 조합원과 임대사업자 간에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

○ 이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에는 조합원이 피해를 입게 되고 또한 무주택자에게는 주택공급 기회가 상실되어 형평성 논란도 예상되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.

## 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략"

V. 토론요지 : "생략"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VII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 IX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붙임 :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2 조제 2 호 및 제 3 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- 구 조문 대비표



## 관 련 법 령 발 취

## $\square$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제48조 (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) (1)사업시행자(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)는 제 46 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제 46 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•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, 관리처분계획을 변경•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장•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(1호 ~7호 생략)
(2)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기준 에 의한다. <개정 2005.3.18>

## (1호 ~6호 생략)

6. 1 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 주택을 공급하고, 2 인 이상이 1 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 주택만 공급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 수 만큼 공급할 수 있다.

가. 투기과열지구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 유자

나. 근로자(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)숙소•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

다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 등
(3)항 ~ (6)항 생략)
(7)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, 관리처분의 방법•기 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$\square$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제52조 (관리처분의 기준 등) (1)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의 경우 법 제 48 조제 7 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
(1호 ~ 9호 생략)
(2)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 48 조제 7 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은 다음 각호의 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범위안 에서 시•도 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고,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.

1. 제 1 항제 5 호 및 제 6 호의 규정을 적용할 것
2. 부대•복리시설(부속토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의 소 유자에게는 부대•복리시설을 공급할 것. 다만, 다음 각목의 1 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1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.

가. 새로운 부대•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 대•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 관등으로 정하는 비율(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. 이하 나목에서 같다)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

나. 기존 부대•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•복리시 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

다.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•복리시설의 추산액이 분양주택중 최소분 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
3. 삭제 <2005.5.18>
(3)삭제 <2005.5.18>

## 조례개정 근거

## 국 민 고 충 처 리 위 원 회

제 목 주택재건축사업시 관리처분인가등에 관한 조례 개선
관련기관 충청북도지사，전라남도지사，경상북도지사
결정사항 관련기관의 장은 각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의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중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도록 한 내용을 상위법령인 「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」제48조 제2항 제6호의 규정과 일치되게 개정 할 것을「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．

이 유 별지와 같다．

$$
\text { 2007. 11. } 19
$$

| 위원장 | 송 | 철 | 호 | 위 | 원 | 이 | 유 | 정 |
| :--- | :--- | :--- | :--- | :--- | :--- | :--- | :--- | :--- |
| 위 | 원 | 강 | 정 | 혜 | 위 | 원 | 이 | 재 |
| 충 |  |  |  |  |  |  |  |  |
| 위 원 | 박 | 종 | 렬 | 위 | 원 | 정 | 노 | 찬 |
| 위 $ㅇ ㅝ ㄴ ~$ | 신 | 철 | 영 | 위 | 원 | 최 | 상 | 림 |
| 위 | 원 | 이 | 권 | 상 | 위 | 원 | 함 인 선 |  |

（시행 ：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팀，2007．11．20）

